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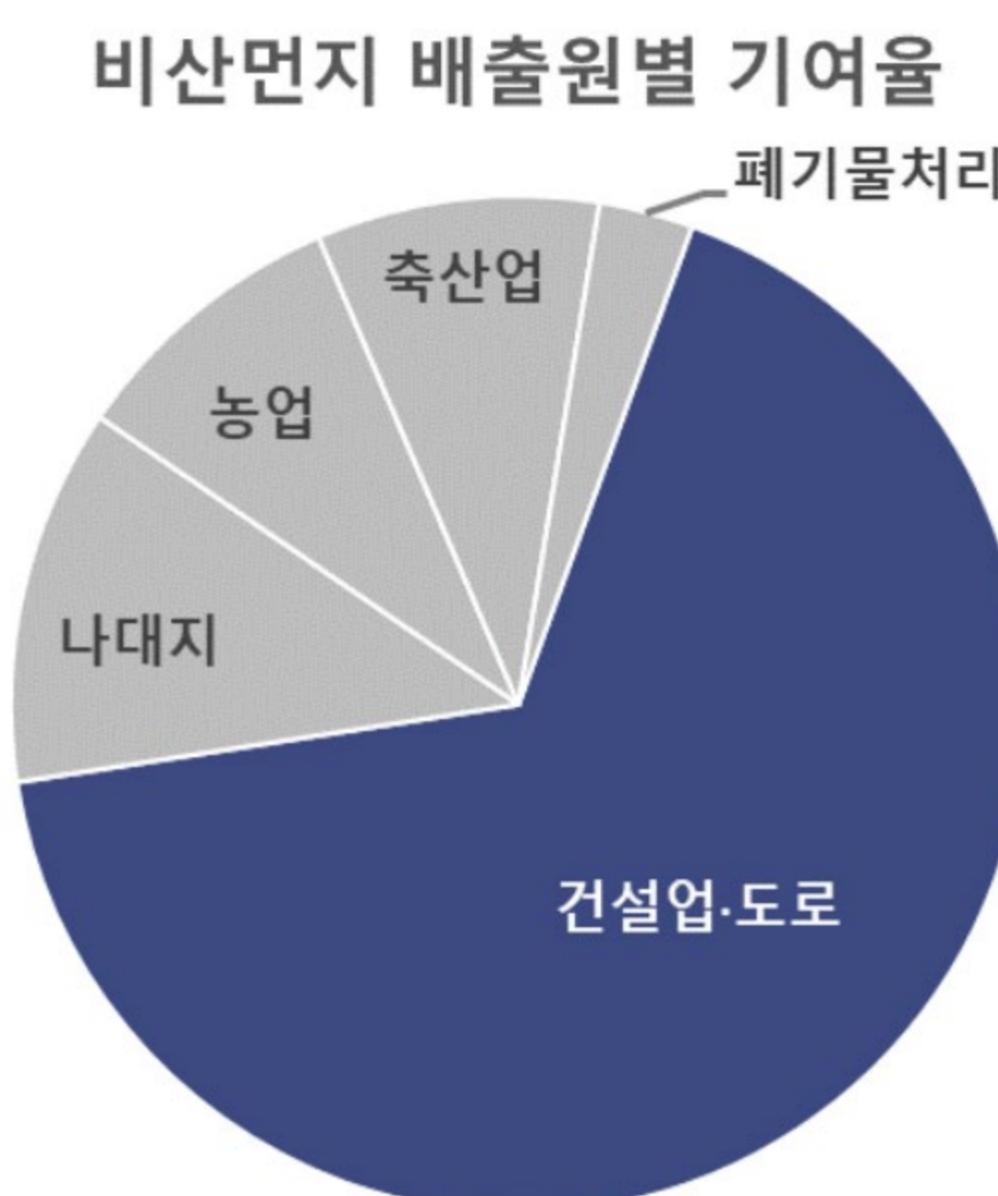
군산시 건설현장 비산먼지 관리·감독 개선

Improvement of scattering dust management and supervision at construction sites in Gunsan City

스물셋
2001642 김은지
2001677 이시온

문제 상황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비산먼지가 있음. 비산먼지는 다양한 사업 중 발생되며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의미함. 이러한 비산먼지의 60% 이상이 건설 현장과 도로재비산에서 나옴. 현장 조사 결과 현장 규모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에 차이가 발생하며, 조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조치의 이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연구 목표

우리는 현재 군산시의 건설 현장 비산먼지 관리·감독의 개선할 점을 파악하여 군산시가 비산먼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연구 과정 I [법적 조치 및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제57조 관련)

5. 건설업

가. 건축물축조공사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연구 과정 II [현재 군산시의 관리·감독]

군산시청 비산먼지 관리 관계자와 인터뷰한 결과 군산시는 현재 정기점검을 월 2회로, 1회당 현장 5곳에 방문하고 있음. 그리고 민원 발생 시 현장점검을 하며, 대규모 현장의 경우에는 불시 점검도 진행하고 있음. 관련 민원으로는 현장 반출입하는 건설기계들을 통한 흙먼지 비산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됨.

"아파트 신축현장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주민들에게 단속 결과 설명 등을 통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000 의원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실적이 미비하다며 현장 확인 후 비산먼지 발생 억제 매뉴얼 전달 및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부분별로 공사현장 등을 임의로 지도 단속하고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해 ..중복으로 지적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감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출처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9일차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세계타임즈-
[HTTPS://M.THESEGYE.COM/NEWS/VIEW/1065543571871022](https://M.THESEGYE.COM/NEWS/VIEW/1065543571871022)

군산시의회의 감사에 의하면 현재 군산시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의 부족함이 드러났으며, 관리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연구 과정III [개선 사항]

	개선 전	개선 후	근거
현장 확인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항과 일치성, 그에 따른 억제시설 설치 등의 확인 10일 이내	발생 신고 필증 배부 후 사업 개시 5일 이내	발생신고 접수부터 필증이 나오기까지 4일 이내인 반면, 신고사항과의 일치·억제시설 설치 여부 현장 조사하는 데 <u>기준 규정은 시간이 지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5일 이내로 조정함.</u>
정기점검 지도 횟수	일반관리 : 1회/년 중점관리 : 3회/년	일반관리 : 3회/년 (공기 6개월 이내인 공사는 최소 2회) 중점관리 : 4회/년 (집중점검기간 : 1회/달)	일별관리는 공기 구분이 없는 기준 횟수에서 세분화하고 늘려 효율성을 높임. 중점관리는 10,000m ²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해당되므로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중점검기간을 만들어 비산먼지와 민원이 최다 발생되는 토공사 기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점검 매뉴얼	세분화되어있지 않은 점검기준, 명령 후 이행하게 하기 위한 사후 조치 부족	건축물축조공사를 기준으로 정리한 점검기준, 기준 적합/부적합, 명령 후 이행 기간 5일 부여, 조치 명령 위반-벌칙	구체화한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 후 부적합을 판단하고 사유와 조치를 명령함. 이후 <u>이행을 위한 기간 5일</u> 을 부여하고 위반내용과 그에 따른 벌칙을 함께 기입하여 업무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개선 전

[별지 제2호서식(3)]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 · 점검표					
I. 사업(장) 현황					
신고(변경) 번호	신고(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변경신고) 기관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설치시기 (공사기간)
사업(장)명	대표자(신고자)	대상사업	대상 사업	규모	대상 사업
대표자(신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배출공정	구조	면적	설치시기 (공사기간)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 사업	규모	면적	설치시기 (공사기간)	면적
II.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요확인사항	점검 결과			
o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o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 여부 o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o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o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여부 o 시설의 임의철거등 변경 여부 o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o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o 방지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지 여부 o 토사운반차량의 과격 및 세륜세차 실시 확인여부 o 도로 굴착공사시의 토사방지 여부 o 주변도로 등 청소실시 여부				
o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o 각종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이행 상태				
III. 특기사항					
IV. 점검자 의견					
V. 첨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개선 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 점검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 점검표						
I. 사업(장) 현황						
신고(변경) 번호	신고(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변경신고) 기관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설치기간 (공사기간)	
사업(장)명	대표자(신고자)	대상사업	대상 사업	규모	면적	
대표자(신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배출공정	구조	면적	설치기간 (공사기간)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상 사업	규모	면적	설치기간 (공사기간)	면적	
II.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요확인사항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여부 •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방진 덮개 방진벽 방진망 방진막 설치 규격에 맞게 설치 설수시설 주변 환경 관리	• 야적물질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사용 • 공사장 경계에 높이 1.8m 이상 설치 •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 설치 • 일생 작업 시 해당 작업 부위 또는 층에 대하여 설치 • 철골구조 내화피복작업 시 먼지발생이 적은 공법 사용 • 분사방식의 야외도장 작업 시 설치 • 토사운반차량의 과격 및 세륜세차 실시 • 토사 및 흙먼지 방지 여부 • 주변 도로 등 청소실시 여부				
부적합	사유	개선 또는 변경 명령 사용제한, 작업중지 (명령 후 이행 기간 5일 부여)				
조치						
III. 특기사항						
IV. 점검자 의견						
V. 첨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벌칙) 제92조(벌칙),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별지 제2호서식(3)]에 근거하여 점검 매뉴얼을 만듦.

결론

군산시 비산먼지 관리 담당자에게 검증한 결과,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실무에서 바로 사용하기에 무방할 것이라 판단함.
특히 건축물 축조 공사 현장 점검 시 기준 및 점검 사항 확인에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세분화되어있지 않은 현 점검표에 비해 특정 확인 사항에 대해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점검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